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박 성 열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(생 략)

5. 討 論 要 旨 (없 음)

6. 修 正 案 의 要 旨 (없 음)

7. 審 査 結 果 : 원안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)

서울특별시종로구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5. 3. 23.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시 민 행 정 위 원 회

1. 審査經過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년 3월 14일 · 종로구청장 원안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5년 3월 14일 원안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148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

제1차 시민행정위원회(2005. 3. 21)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생활복지국장 조 성 린)

가. 제안이유

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○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→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(안 제32조)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박 성 열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(생 략)

5. 討 論 要 旨 (없 음)

6. 修 正 案 의 要 旨 (없 음)

7. 審 査 結 果 : 원안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)